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위스 종합보고서

스위스 추크 크립토밸리 사례를 중심으로

2025. 3.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금융연구1실 디지털금융팀 유태이 매니저

T. 051-631-2764 E. cindy@kbfc.or.kr

목 차

I. 스위스 개요	1
가. 추크 도시 개요	
나. 스위스의 정치적 특징	
다. 스위스의 디지털 분야 평가	
II. 스위스 추크 크립토밸리	4
가. 스위스 디지털금융의 역사	
나. 기업 환경	
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친화적 사례	
라. 크립토밸리 협회	
마. 스위스 추크 소재 디지털금융 기업 및 투자	
III. 스위스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정책	15
가.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한 법적 기반	
나. 스위스 FINMA ICO 가이드라인	
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 동향 및 사례	
라. STO 관련 법률 동향	
IV. 요약 및 시사점	25
가. 추크의 성공요인 요약	
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시사점	

<참고>

1. 스위스 법인세 체계
2. 스위스 금융시장인프라법 인가 요건
3. 우리나라의 ICO, 암호화폐, STO 관련 법률 동향 등

1 스위스 개요

가 추크 도시 개요

- 추크는 스위스 연방국가 추크 주의 주도¹⁾
- 크립토밸리(CryptoValley)로 알려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



출처: Kanton Zug 홈페이지

명칭	스위스 연방 추크 주 추크 시 (Swiss Confederation City of Zug, Canton of Zug)
연방 가입일	1352년 6월 27일
도시 면적	21.61 km ²
도시 인구 수	31,300명(2021년 기준)
도시 언어	독일어(81.8%), 이탈리아어(3.8%), 세르보-크로아티아어(3.2%)
도시 내 산업 클러스터	블록체인 핀테크 IT, 생명과학, 기술산업, 소비재 및 상품 클러스터, 금융서비스 클러스터
도시 취업자 수	총 취업자 수 41,375명(1차 산업 146명, 2차 산업 6,293명, 3차 산업 34,936명) (2018년 기준) ²⁾
명목 GDP(스위스)	8696억 달러(2023)/ 1인당 9만 8767달러
정치적 특징	내각책임제, 법적 중립국

1) 주도는 주의 대표 도시를 뜻함.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들은 주도가 있음

2) 출처: 스위스 연방 통계청

- 연방(Bund)정부, 주(Kanton)정부, 시·군(Gemeinde)정부로 국가 권력 3단계 분산
 - (연방정부) 안전보장, 외교관계 유지, 조세, 체신, 금융, 병역 업무의 조정 및 감독, 7개부로 구성, 7인의 연방평의회가 장관직 담당
 - (주정부) 26개 주로 구성, 연방정부 결정사항 시행 및 연방헌법 5조a에 근거해 국가 사무의 배분과 수행은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47조에 근거해 주의 독립성 및 업무,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
 - * 각 주마다 독자적인 헌법, 의회, 정부 및 주 법원 운영, 연방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 입법권, 조세권, 행정권 등 보유
 - * 공공재산, 학교, 경찰, 소방, 보건 및 민방위 운영 등 분야에서는 독자적 전권 행사
 - (시·군정부) 2,842개의 시·군으로 구성
- 영세중립
 -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로부터 영세중립국으로 보장받은 후, 200년 이상 무력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중립을 기본 대외정책으로 채택
 - 중립 정책 덕분에 여러 국제기구와 다자간 회의의 본거지가 됨 (제네바의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 본부 등)
- 직접 민주제
 - 국민은 법안이나 헌법 개정 등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있으며 시민투표와 시민발안제가 존재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시장 규제 기관으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법에 따라 운영되며 이 법은 금융시장 감독과 관련된 연방법의 상위법 역할을 함
 - (감독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 및 자산관리사 등

○ 글로벌 혁신 지수(GII)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매년 국가별 혁신역량을 측정하여 Global Innovation Index를 발간하며 133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78개 지표를 통합해 구성
- 2024년 스위스는 14년 연속 1위(67.5점), 한국 6위(60.9점)

순위	국가	지수	전년도 순위
1	스위스	67.5	1
2	스웨덴	64.5	2
3	미국	62.4	3
4	싱가포르	61.2	5
5	영국	61	4
6	한국	60.9	10
7	핀란드	59.4	6
8	네덜란드	58.8	7
9	독일	58.1	8
10	덴마크	57.1	9

순위	국가	지수	전년도 순위
11	중국	56.3	12
12	프랑스	55.4	11
13	일본	54.1	13
14	캐나다	52.9	15
15	이스라엘	52.7	14
16	에스토니아	52.3	16
17	오스트리아	50.3	18
18	홍콩	50.1	17
19	아일랜드	50	22
20	룩셈부르크	49.1	21

○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디지털 기술 적응력 등에 대해 미래준비도, 기술, 지식 등 3개 분야, 9개 부문, 54개 세부 지표를 측정하여 평가·발표
- 2024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1위, 한국 6위)
- 스위스의 강점은 지식재산권, 국제적 경험, 통신 기술, 지식 이전, 고도로 숙련된 해외 인력

순위	국가	지수
1	싱가포르	100
2	스위스	93.15
3	덴마크	91.99
4	미국	91.31
5	스웨덴	90.42
6	한국	88.62
7	홍콩	88.11
8	네덜란드	87.03
9	대만	86.33
10	노르웨이	84.58

순위	국가	지수
11	아랍에미레이트	84.06
12	핀란드	83.57
13	캐나다	83.16
14	중국	82.59
15	호주	81.24
16	이스라엘	80.75
17	아일랜드	80.34
18	영국	78.21
19	아이슬란드	78.18
20	프랑스	76.58

2 스위스 추크 크립토밸리

가 스위스 디지털 금융의 역사

- 16세기 종교 박해의 피난처로 프랑스 위그노(칼뱅파 신자)의 금융 전문가들이 스위스로 이주하며 금융산업 발전의 배경이 됨, 이후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 중립국 정책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중심지로 발전
- 2014년 이더리움 재단이 추크에 설립
 - (이더리움 재단)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개발, 이더리움 플랫폼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역할을 하는 코인 이더(ETH) 발행

항목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코인의 목적	디지털 화폐(교환의 수단)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및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사용료
총 공급량	21백만 개(고정)	무제한
합의 알고리즘	작업 증명(PoW)	지분증명(PoS)

- 2016년 3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며 여러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여들어 크립토밸리라 불리기 시작
- 2017년 핀테크 진입장벽 제거를 위해 샌드박스 제도 도입
- 2018년 2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ICO 가이드라인 발표
- 2019년 스위스 기반의 SEBA와 Sygnum에 은행 라이선스를 부여,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은행으로 인정
- 2020년 크립토밸리의 코로나
 - 추크시는 연방정부에 1억 스위스프랑(약 1300억 원)의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나 연방정부는 가상자산의 높은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이유로 지원 거부
 - 스위스블록체인연합(SBF)이 추크 소재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기업의 80%가 향후 6개월 내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³⁾
 - SBF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원인은 ① 투자 유치 실패 및 불확실성 증가(코로나 팬데믹 이후 투자자들이 신중해지는 경향이 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짐), ② 스타트업 특성상의 대출 승인 거부(과거 매출 자료가 적거나 없어 대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3) 출처: 추현우, 가상자산 1번지 스위스 추크, 코로나19 사태에 '흔들', 디지털투데이, 2020. 5.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05>

- 2021년 SIX 금융그룹의 디지털거래소(SDX)가 스위스 FINMA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음
- 2021년 2월과 8월 분산원장기술법(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ct) 시행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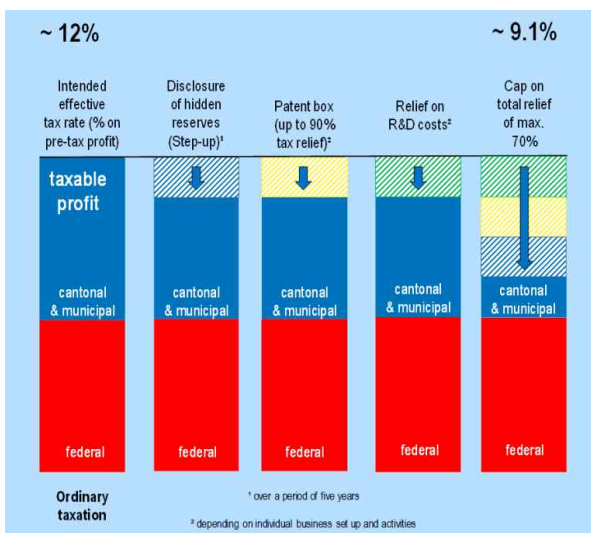
기업 환경

○ 낮은 법인세율

-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연방 법인세율과 주(칸톤)별 법인세율로 구성
- 연방 법인세 : 8.5%(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만 적용)
- 주(칸톤) 및 지방 법인세 : 각 칸톤은 자체 법인세율을 설정
- 추크 법인세율: 11.8%(연방, 주 및 공동체 세금 포함)

* 취리히 19.65%, 루체른 12.15%, 베른 21.04% 및 스위스 평균 14.60%

- 추크 주(칸톤)세 감면 가능 범위 그래프



- ❶ 기본 실효세율: 연방세 + 주(칸톤)세 및 지방세
- ❷ 숨겨진 적립금 공개 : 기업의 미공개 적립금 공개 시 5년에 걸쳐 세금 감면
- ❸ 특허 박스 : 특허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해 세금 최대 90% 감면
- ❹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개별 기업의 사업 구조 및 활동에 따라 상이)
- ❺ 총 감면 한도 최대 70% : 모든 감면 혜택 활용 시 법인세 부담 70% 감면

Zug

* 한국 법인세 9~25%(누진세율), 미국 연방 법인세 21% + 주 법인세 2.5~11.5%

** 참고1 스위스 법인세 체계

- 추크 개인 소득세율: 22.06%

* 취리히 39.63%, 루체른 30.31%, 베른 41.04% 및 스위스 평균 33.45%

○ 입지 조건

- 스위스 전체 인구 900만 명의 3분의 1인 390만 명의 사람이 거주하는 취리히 대도시권의 일부이며, 취리히 공항에 인접
- 남북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이탈리아 밀라노, 동서로는 프랑스 리옹과 마르세유, 오스트리아 빈을 연결하는 핵심 경제권에 위치

○ 스위스 금융 비밀주의

- 은행 계좌에 숫자와 알파벳 문자로 조합된 코드를 예금주 이름 대신 사용
- 1934년 연방 은행 및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스위스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한 ‘은행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국제협약(AEOI)’에 2017년 가입, 회원국이 원할 경우 해당국 국민이 보유한 스위스 은행 내 계좌 정보를 제공
- 조세회피가 용이하다는 특징

○ 하향식(Bottom-up)의 기술 접근 방식

- ICO에 대한 지침과 토큰 분류를 발표하여 기업의 ICO 프로젝트 시도에 대응
- 2021년 8월 DLT 프레임워크를 발표, 분산원장에 대한 규제 솔루션을 제공하여 명확한 법적 환경에서 기업들이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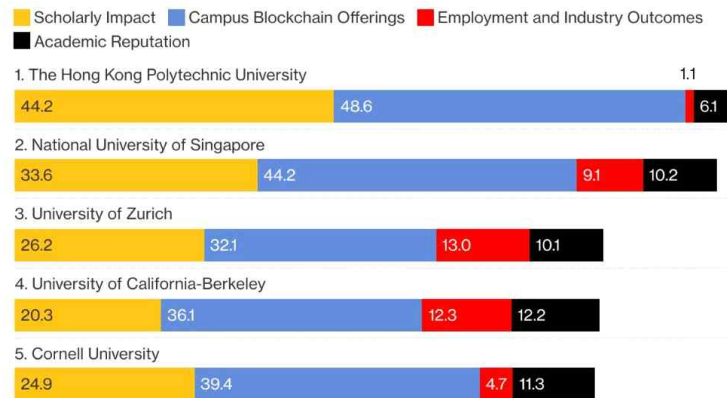
○ 선도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

- 스위스 연방 자금세탁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은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금융 중개 활동에 적용
- 제3자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금융 거래 시 스위스 금융 중개인은 법정 화폐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의무를 짐

○ 고숙련 국제 인재 보유

-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와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EPFL)와 같은 세계 유명 공과대학 보유
- 디지털 신뢰 센터(C4DT): 스위스 로잔의 C4DT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와 산업 파트너와의 협업 진행

- LexTech 연구소: 뇌샤텔대학교(University of Neuchâtel)의 연구소는 스마트 계약과 DAO⁴⁾의 글로벌 규제를 중심으로 신기술에 대한 법적 연구 수행
- 취리히 대학의 블록체인 연구센터: Coindesk 우수한 블록체인 대학 3위에 선정



CoinDesk's Best Universities for Blockchain 2022

Daniel Ferraz / CoinDesk

- **추크 주 경제 진흥팀(Team Economic Promotion)**의 스위스 사업 정착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 경제 진흥팀은 현지 거주 및 신규 정착 기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사업 설립 지원, 필요 허가 취득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결
 - 비즈니스 센터 공간, 독립 임대 등 사무실 공간 마련 도움
 - 이주 서비스 정보 제공, 배우자와 가족 통합 지원, 학교 관련 안내
 - 동종 업계 기업 및 커뮤니티 플랫폼과의 연결을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
 - 주 및 스위스 당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중앙 연락 창구로서 기능

4)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의미

- 추크 주 디지털 신분 증명 활용
 -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분 증명 시스템 도입
- 스위스 연방철도(SBB) 매표기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
 - 종이 지갑으로 비트코인 구매 가능
 - (수수료) 6~14%
 - (금액 제한) 최대 500프랑(약 80만 원)
- 2016년 공공요금(수도요금, 교통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시행
 - (서비스 기간) 2016. 7. 1 ~ 12. 31
 - (금액 제한) 200프랑(약 24만 2000원)
- 홈오브블록체인 이니셔티브 지지
 - 추크 주 재무장관인 하인츠 탠들러(Heinz Tännler) 정부 참사관의 지지를 받음
 - 스위스 연방 재무부 후원을 받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 다보스 포럼 개최 지원, 알파인 테크 포럼 개최 지원
 - 스위스 디지털 자산 보관 보고서 발간
- 스위스 블록체인 연합(SBF) 가입
 - 베른(Bern)에 소재하며 스위스의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규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조직
 - 취리히, 추크, 뇌샤텔, 티치노 주와 여러 블록체인 기업이 블록체인 연합에 가입
 - 2024년 10월 스위스 금융시장인프라법(FinfraG=FMIA) 개정에 대한 정책 제안서 발간 (중앙예탁기관 및 지급시스템, 유가증권에 대한 법적 정의 명확화, 금융 인프라의 기술 발전 반영 필요성, 발행인 의무 실무 적합성 지적 등)
- 크립토밸리 협회 설립
 - 스위스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자유헌회

라

크립토밸리협회 CVA (CryptoValley Association)

- 설립일: 2017년 1월 31일
- 위치: 스위스 추크 주
- 조직 구성
 - Working Group(AML 및 규정 준수, 사이버 보안, 교육, 기관, 투자자 등)
 - * 주제별 Working Group은 콘텐츠 제작, 백서 발행, 행사 개최 등 각 분야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
 - 라틴 아메리카 지부, 중동 지부, 서부 스위스 지부
- 크립토밸리 네트워크 멤버십
 - 현재 1,000명 이상의 전문가, 250개 이상의 기업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

구분	비용(연간)	혜택
개별 회원	CHF 100 (약 16만원)	- 회원 리스트에 개인 프로필 등록 - 워킹그룹 참여 기회 및 임원 자격 - 연구 및 백서 작성 참여 - 개별 CVA 회원과 네트워킹 - 정기 미팅 초대 - CVA 및 파트너 이벤트 할인 - 크립토밸리 컨퍼런스 CHF 100 할인 - 회원 전용 이벤트 참석 -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 접근 권한 - 메일과 LinkedIn에서 CVA 회원로고 사용 - 새 이사회 투표 및 선출권 - 채용공고 포털 접속 가능 -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 레터
스타트업 법인 회원 *20명 미만	CHF 500 (약 80만원)	- 개별 회원 혜택 및 - 협회 소통 채널 활용 - 스폰서십 패키지를 통한 브랜딩 기회 - 법률, 세무, 사무공간, 인큐베이터, 교육 등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회 - 모든 CVA 회원과의 네트워킹 - 크립토밸리 컨퍼런스 CHF 500 할인 - 행사 프레젠테이션 진행 기회 - 국제 컨벤션의 부스 및 연설 슬롯 할인 - 펀드 모금 기회 - 프로젝트 및 스타트업 소개 기회 - 워킹그룹을 통한 투자 네트워크 접근 기회

		- CVA 웹사이트에 채용공고 개시 - 법률 및 세무서비스, 은행 개설 및 스위스 법인 설립 방법 소개
SME 법인 회원 *150명 미만	CHF 2,500 (약 400만원)	- 상등
Enterprise 법인 회원 *150명 이상	CHF 5,000 (약 800만원)	- 상등
NGO/ 협회	CHF 500 (약 80만원)	- 회원 리스트에 협회 프로필 등록 - 협회 소통 채널 활용 - 워킹 그룹 참여 기회 및 임원 자격 - 연구 및 백서 작성 참여 - 모든 CVA 회원과 네트워킹 - CVA 및 파트너 이벤트 할인 - 크립토밸리 컨퍼런스 CHF 500 할인 - 행사 참석 및 개최 - 행사 프레젠테이션 진행 기회 -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 접근 권한 - 국제 컨벤션에서 부스 및 연설 슬롯 할인 - 유명 행사 연설 기회 - 이메일과 웹사이트에서 CVA 회원 로고 사용 가능 - CVA 웹사이트에 채용 공고 개시 -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 레터

○ 크립토밸리 컨퍼런스(2025년 6월 5-6일 개최 예정)

- 참석자 1500명 이상, 기조 연설 60명 이상, 7개의 강의, 25개사의 전시, 200개사 이상 참석
- (공동주최) 루체른대학교, 크립토밸리협회
- (주제) DEX(Decentralized Exchange) 개발, 스테이킹 수익 창출,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 규제 및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버보안, 지속가능성, GameFi · Play-to-earn · 메타버스, 토큰화 및 CBDC, 블록체인 트릴레마⁵⁾ 관리, 인프라 · 상호운용성 · 프로토콜
- 산업 전문가 발표, 기업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패널 토론을 통해 기술, 경제 및 금융, 법률 및 규제에 대해 논의

○ 2025 Web3 बैं킹 심포지엄 2.0 (2025년 3월 27일 개최 예정)

- 참석자 400명 이상, 은행 25개 사 이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 사업자 50인 이상 참석

5) 블록체인 트릴레마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동시에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Security), 확장성(Scalability)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기 어렵다는 것

-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되는 기존 은행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디지털자산 통합에 초점을 맞춘 행사
- (주제) 분산형 금융, 자산 토큰화, 지불수단의 발전, AI banking서비스
- 은행과 블록체인 관련 산업 전문가의 발제 및 패널토론
- 기타 행사 개최
 - 지부별 Meet-up 개최 및 RWA, 분산형 시스템, 블록체인 등 연구 심포지엄 개최 (연구 발표, 전문가 기조연설, 스타트업 소개, 네트워킹 등)

○ 스위스 추크 소재의 디지털금융 관련 기업

연번	기업명	구분	설명
1	비트코인 스위스 (Bitcoin Suisse Ag)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 및 스테이킹, 암호화폐 콜드 스토리지, 암호화폐 담보 대출 등
2	이더리움 재단 (Ethereum foundation)	암호화폐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 암호화폐 개발 연구
3	비트메인(Bitmain) 지사	암호화폐	암호화폐 채굴 기기 및 서버 개발
4	ShapeShift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5	Xapo	암호화폐	비트코인 수탁보관 스타트업
6	크립토 파이낸스 (Crypto Finance)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 중개, 수탁서비스
7	소시오스 닷컴	암호화폐	스포츠 팬 참여 토큰 플랫폼
8	크론 벤처스 (KRONN Ventures AG)	암호화폐	암호화폐 크론 코인 개발
9	INACTA	블록체인	IT 컨설팅 및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10	멜론포트(Melonport)	블록체인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관리 프로토콜 개발
11	카르다노 재단 (Cardano foundation)	블록체인	오픈소스 지분증명 블록체인 알고리즘 개발
12	Casper	블록체인	오픈소스 지분증명 블록체인 개발
13	코스모스(Cosmos)	블록체인	인터체인 블록체인 개발
14	NEAR protocol	블록체인	layer 1 블록체인 개발
15	Solana	블록체인	분산 앱, 암호화폐 프로젝트용 블록체인 플랫폼
16	CELESTIA	블록체인	모듈형 블록체인 개발
17	TON(The Open Network)	블록체인	Telegram 개발 블록체인, 암호화폐
18	Web3 foundation	블록체인	분산형 웹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개발 연구
19	FANBLOCK	블록체인	스포츠 팬 참여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20	Powerledger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P2P 에너지 거래 플랫폼
21	Ficas	핀테크	암호화폐 자산관리
22	NEXO	핀테크	암호화폐 자산관리
23	Pyth network	핀테크	금융 자산 데이터 전달 오라클 기술
24	etops	핀테크	머신러닝, AI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25	Lukka	핀테크	디지털자산을 위한 기업 데이터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분석 기법
26	Golem	핀테크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 거래
27	Safe	핀테크	디지털자산 지갑 및 서명 및 암호화폐 수탁보관
28	dYdX	핀테크	탈중앙화 금융 거래 플랫폼
29	status	핀테크	분산형 데이터 저장 및 관리
30	Kasko2go	핀테크	AI 기반 보험 포트폴리오 분석
31	AMINA Bank AG	핀테크	암호화폐 은행, 보관 및 거래
32	CV VC	벤처캐피탈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대상 벤처캐피탈 투자
33	Vereign	IT	자기주권 신원(SSI),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 스위스 추크 공식 홈페이지, CVVC Top50 report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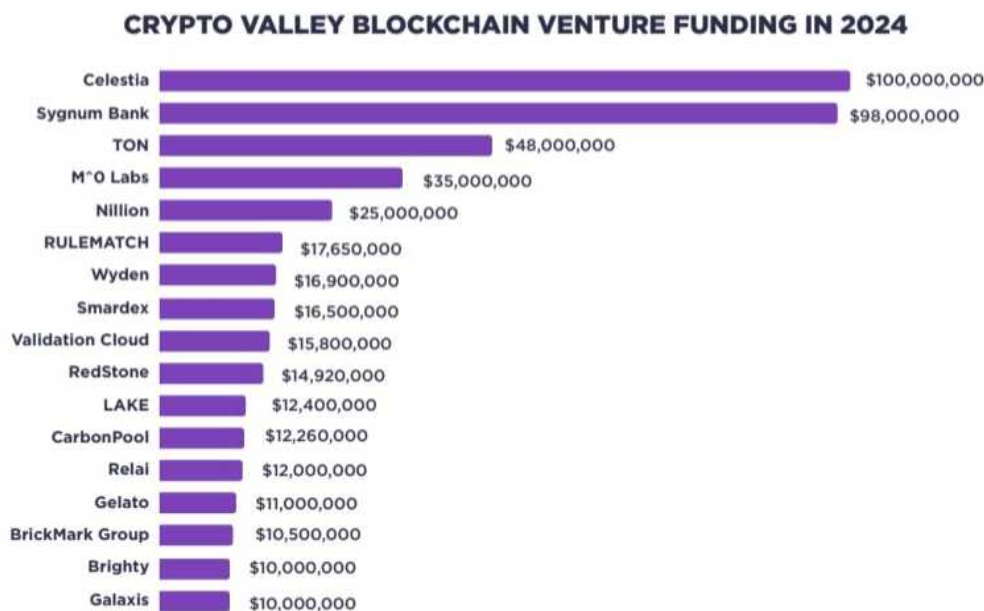
○ CV VC(Crypto Valley Venture Capital)

- 크립토밸리의 블록체인 벤처캐피털로, 전 세계의 기술 기업에 시드 펀딩과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

○ CV랩스 (크립토 밸리 실험실) 운영

-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CV VC와 IT 컨설팅 기업 이넥타(INACTA)가 설립한 블록체인 지원 센터
-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사무실 공간 제공, 신생업체에는 행정, 법률, 기술, 경영 등에 대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제공
- 연 두 차례 블록체인 관계자들을 초청해 ‘CV 블록체인 서밋’ 행사 개최 (2025년 가을 개최 예정)
- 스타트업 대상의 블록체인 경진대회 개최

○ 스위스 크립토밸리의 블록체인 벤처 투자 규모⁶⁾



2024 크립토밸리의 천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2024년 크립토밸리는 총 56건의 거래를 통해 5억 8천만 달러의 블록체인 벤처 투자 자금을 확보(전년 대비 규모는 8% 증가, 거래 건수는 13% 감소)
- 블록체인 허브의 입지를 굳건히 하며 전 세계 블록체인 투자 자금의 5.2%를 유치 (거래 건수는 전 세계의 13%)

6) 출처: CV VC Top50 report

- 크립토밸리의 블록체인 투자 건당 중간 규모(median deal size)는 전년 대비 70% 증가하여 560만 달러(약 75억 원)에 도달

○ 크립토밸리의 주요 투자사

- YZI Labs(이지 랩스 前 Binance Labs), Coinbase Ventures(코인베이스 벤처스), Polychain Capital(폴리체인 캐피탈), Fenbushi Capital(펜부시 캐피탈), Hashkey Capital (해시키 캐피탈) 등 총 60개 사

3 스위스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정책

- 금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개정된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을 기반으로 함
- 스위스 ICO 가이드라인은 토큰을 결제형, 기능형, 자산형으로 나눔
 - ICO 가이드라인 내용과 암호화폐, STO로 분야를 나누어 조사함

가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2020년 9월 연방 정부를 통과하고 2021년 2월과 시행된 분산원장기술법(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ct)은 채무법(Code of Obligation), 연방 중개 증권법(Federal Intermediated Securities Act) 및 국제 사법(Federal Act on International Private Law)에 대한 연방법에 적용됨
- 2021년 8월 시행된 DLT법은 금융서비스법(FinSA), 국립은행법(NBA), 은행법(Banking Act, BA), 금융기관법(FinIA), 자금세탁방지법(AMLA), 금융시장기반시설법(FMIA),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t Enforcement and Bankruptcy Act, DEBA)에 대한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조례(blanket ordinance)와 함께 발효
- 암호화 자산의 수탁과 보관 관련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 디지털자산 분리에 대해 개정안은 특정 조건 하에서 수탁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반환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 추가 - 수탁자가 파산할 경우 암호화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segreated from the other assets on condition)되어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함
은행법(BA)	- 암호화 자산을 수탁자산으로 명시하여 은행의 파산시 암호화 자산은 다른 자산과 분리됨 - 은행 및 금융기관이 부외거래(Off balance sheet)⁷⁾로 쉽게 보유할 수 있게 되며, 자본 요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7)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은 거래

○ DLT 등록 증권 및 DLT 거래 시설 관련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채무법(CO)	- 무권화 증권(uncertificated securities)의 새로운 형태인 "등록된 무권화 증권"(registered uncertificated securities) 도입 - 법적으로 유효한 증권의 이전을 위해 서면으로 서명된 양도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점 - 이전을 위해 중앙 증권 예탁 기관이 필요하지 않음
금융시장인프라법(FMIA)	- DLT 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수용하기 위해 'DLT 거래시설(DLT trading facility)' 라이선스 도입, 기존 거래소들의 규제를 따름 - 전통적인 거래소(증권거래소 등)과 달리 DLT 거래 시설은 전문 시장 참가자(은행 및 증권사)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접근 허용 - DLT 거래시설은 DLT 증권의 보관(custody), 청산(clearing) 그리고 결제(settlement) 서비스를 추가 라이선스 없이 제공할 수 있음 - 특정 유형의 DLT 증권을 청산하는 것은 위험 분산을 위해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역할은 기존 중앙 청산기관이 할 것임 - 인가요건: 기존 거래소들의 요건과 유사 스위스 법인에 의해 운영, 특정 서비스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권한을 제외하면 '완전히 분산된(entirely decentralised) 플랫폼'은 스위스에서 인가를 받을 수 없음
금융시장인프라조례(FMIO)	- DLT 거래 시설과 관련된 요건 상세히 규정 - 이미 체결된 거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특정 금융상품(일부 파생상품 및 자금세탁방지 규칙의 시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상품)은 DLT 거래 시설에서 거래될 수 없음 -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법에 따라 소규모 DLT 거래 시설에 대해 일부 규정을 간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소규모 거래소 요건과 유사함

○ 자금세탁방지 관련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자금세탁방지법(AMLA)	- DLT 거래시설이 금융 중개기관으로 간주되어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 가상화폐 경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AMLA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조례(AMIO)에 따라 금융 중개기관으로 기준이 변경되며 조건 추가 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지속적인 사업 관계(permanent business relationship)를 유지하는 경우, ②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술적 솔루션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 PwC, Swiss DLT Law: New regulations bring new opportunities 자료 참고

- 금융시장인프라법(FMIA)의 DLT 거래 기관의 정의 및 요건(제4a장)

제73a조(정의)

1. DLT 거래소(DLT Trading Facility)는 DLT 증권(DLT Securities)의 다자간 거래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 여러 참가자 간의 호가를 동시에 교환하고,
 - 비재량적(non-discretionary) 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 제73c조 제2항 e호에 따라 참가자를 허용할 것
- b. DLT 증권을 중앙 보관하며 통일된 규칙 및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할 것
- c. DLT 증권의 청산 및 결제를 통일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할 것
2. 상업적 운영 기준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

제73b조(거래소에 적용되는 특정요건)

- | | |
|---------------------------------|------------------------|
| a. 자율 규제(Self-Regulation, 제27조) | b. 거래 운영(제28조) |
| c. 거래 전·후 투명성(제29조) | d. 질서 있는 거래 보장(제30조) |
| e. 거래 감독(제31조) | f. 거래 감독 기관 간 협력(제32조) |
| g. 거래 정지(제33조 제2항) | h. 항소 기구(제37조) |

제73c조(참가자의 승인 및 의무)

1. 다음의 기관 및 개인이 DLT 거래소 참가자로 승인
 - a. 금융기관법(FinIA) 제41조에 따른 증권사
 - b. FINMA의 감독을 받는 기관(FINMASA 제3조), 해외 감독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 단, DLT 거래소가 이들이 증권사와 동등한 기술적·운영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경우
 - c. 스위스 중앙은행(SNB)
 - d.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e. 자신의 이름과 계정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하는 자연인 및 법인
2. 스위스 거주 참가자는 FINMA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제출해야 함
 - 외국 거주 참가자의 경우, FINMA가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DLT 거래소가 보장해야 함
3. DLT 거래소 참가자는 제38조(기록 보관 의무) 및 제39조(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
 - 단, 연방 평의회는 제1항 e호의 참가자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음
4. 연방 평의회는 참가자의 승인, 의무 및 제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5. DLT 거래소는 참가자의 승인, 의무 및 제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특히 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함
6. DLT 거래소는 참가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위반 시 계약에 따른 제재를 부과해야 함

제73d조(DLT 증권 및 기타 자산의 승인)

1. DLT 거래소는 DLT 증권의 거래 승인 및 기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해야 함
 - 특히, DLT 증권 및 발행자 또는 제3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을 규정
 - 투자설명서(prospectus) 공개 의무는 금융서비스법(2018년 6월 15일 제정, 제35~57조)에 따라 결정

2. DLT 거래소가 DLT 증권 외의 자산을 거래 승인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승인 요건을 규정
3. 연방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a. 일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DLT 증권만 DLT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요구
 - b. 금융시장 참가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및 무결성 보호를 위해 특정 DLT 증권 및 기타 자산의 거래를 금지
4. DLT 거래소는 규정 준수를 감독하며, 위반 시 계약에 따른 제재를 부과해야 함

제73e조(추가 요건)

1. 제73c조 제1항 e호에 따라 참가자가 허용되는 DLT 거래소의 경우, 연방 평의회는 추가적인 참가자 보호 요건을 설정할 수 있음
2. 중앙 보관,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DLT 거래소의 경우, 연방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설정해야 함

a. DLT 증권의 중앙 보관, 청산 및 결제	b. 담보 요건
c. 자본 적정성 요건	d. 리스크 분산
e. 부대 서비스 제공 조건	f. 유동성 관리
g. 참가자 디폴트 발생 시 절차	h. 자산 분리(Segregation) 요건
3. 연방 평의회는 제2항의 요건을 중앙예탁기관(제61~73조)의 요건을 기반으로 설정
4. 필요한 경우, 기술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FINMA가 제2항의 요건을 수립할 권한을 가질 수 있음
5. SN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DLT 거래소에 대해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설정할 수 있음

제73f조(소규모 DLT 거래소에 대한 요건 완화)

1. 연방 평의회는 법의 보호 목적을 고려하여, 소규모 DLT 거래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완화
 - a. 업무 관리 책임 기관과 감독·통제 기관의 분리(제8조)
 - b. 인가 또는 승인 대상이 아닌 부대 서비스 제공(제10조)
 - c. 자율 규제 기구(제27조 제2항) 및 항소 기구(제37조 제1항)의 독립성 요건 완화
2. DLT 거래소는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규모로 간주
 - 금융시장 참가자 보호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리스크가 낮을 것
 - 참가자 수, 거래량, 보관 자산 규모, 청산 및 결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연방 평의회가 소규모 기준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함
3.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는 DLT 거래소는 이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하며, 연방 평의회가 세부 사항을 규정

* 스위스 법(독일어 원본)의 영어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법적 효력 없음

○ ICO(Initial Coin Offering)의 정의

-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초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반 대중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

○ 2018년 2월 스위스 FINMA ICO 가이드라인 발표

- 스위스는 ICO 발행과 거래가 늘어나며 문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금융시장의 규제에 따라 ICO를 다룰 수 있도록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
- ICO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구조건, 발행과 거래를 위한 필요사항을 명시하며, 토큰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나 법을 정리함

구분	경제적 기능에 근거한 분류	토큰 발행 방식	설명	규제
토큰 종류	결제(Payment)형 토큰	Pre-financing, (사전자금조달) Pre-sale (사전판매) 토큰 종류와 무관하게 증권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 준수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대한 지급수단, 현금이나 가치이전으로 사용되는 경우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X)	지급수단에 관한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기능(Utility)형 토큰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토큰	자금세탁방지법 규제 대상 아님 단 투자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증권에 해당
	자산(Asset)형 토큰		토큰 발행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 등 일정한 자산(asset)을 표창하는 토큰, 물리적 자산에 대한 토큰도 포함	증권으로 분류, 증권거래법 준수
	혼합(Hybrid)형 토큰		여러 가지 속성을 겸하는 토큰	중복 규제 대상

- Pre-financing과 Pre-Sale은 토큰의 발행 방식을 의미하며, 토큰의 기능적 종류와 무관하게 토큰이 공개 발행되기 전 투자를 받고 토큰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토큰은 증권에 해당

* Pre-financing(사전 자금조달): 토큰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고 추후 토큰을 받을 권리를 부여

* Pre-Sale(사전 판매): 토큰이 공개되기 전 사전적으로 판매를 진행, 투자자가 향후 다른 종류의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토큰을 받는 경우

○ 스위스 ICO 사례

- (Tezos) Arthur Breitman가 개발한 Tezos 토큰, Tezos 재단 설립과 Tezos 백서를 발표하고 2017년 7월 크립토펙리인 스위스 추크에서 Tezos ICO를 개최
- Tezos ICO는 약 2억 3200만 달러를 모았으나 Tezos의 약관에는 이 기금이 “환불불가 기부금” 이고 투기적 투자가 아니라고 명시하며 Tezos는 투자자들에게 토큰이 전혀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
- Tezos ICO는 약 66,000개의 비트코인과 361,000개의 이더를 받아 당시 가치로 약 2억 3,200만 달러를 모으게 됨
- 그러나 투자자들은 토큰을 받지 못하였고, 해당 토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SEC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미국 증권법 위반에 대한 소송에 휘말림
- 이에 Tezos 재단은 2,500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

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 동향 및 사례

- FINMA ICO 가이드라인 중 결제(Payment)형 토큰에 해당할 수 있음
 -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대한 지급수단, 또는 현금(가치) 이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법(AML/A)상 지급수단에 관한 규제를 받음
- 2019년 11월 ICO 가이드라인의 보충자료 Supplement of Guideline(ICO)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설계에 따른 법률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예금 수취, 집합투자계획 관리·보관·배분, 금융시장인프라 운영, 기타 금융중개 활동에 대해 규제함

스테이블코인 종류	법률 적용
화폐와 연결된 스테이블코인	- 특정 법정화폐(예: 1토큰 = 1 CHF)와 고정 환매권이 연결된 경우, 은행법에 따른 예금으로 분류 - 환매권이 기초 자산(예: 통화 바스켓)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은행법에 따른 예금인지 집합투자기구인지 구분 - 기초자산이 토큰 보유자의 계좌에서 관리될 경우 집합투자계획으로 간주 - 기초자산이 토큰 발행자의 계좌에서 관리될 경우 은행법에 따른 예금으로 간주
상품과 연결된 스테이블코인	- 기초자산 소유권이 토큰 보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증명되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음 - 계약상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만 증명될 경우 은행법에 따른 예금 또는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과 연결된 스테이블코인	- 부동산 또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연결되며 환매권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증권과 연결된 스테이블코인	- 증권으로 간주

- 의심스러운 안정화 메커니즘과 관련해, 일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ICO 자금을 특정 자산에 투자해 가격 안정성 또는 가치 증가를 달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이 신뢰할 만한 경우는 드물며 스위스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는 FINMA의 집행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2024년 6월 Stablecoin: risk and challenges for issuers of stablecoins and banks providing guarantees
 -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분류는 은행법상 예금 또는 집합투자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은행법상의 취급, 지급보증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스위스 가상자산은행(Crypto Bank)⁸⁾
 - 가상자산 은행이란 예금, 대출, 이체 등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가상자산에 대하여 제공하는 은행
 - 가상자산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는 은행업 라이선스와 증권업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해야 하며 스위스 금융감독청의 허가가 필요
 - 시그넘 뱅크(Sygnum Bank)과 아니마 뱅크(ANIMA Bank, 前 SEBA Bank)

명칭	라이선스	서비스
시그넘 뱅크 (Sygnum Bank)	은행업 및 증권업 라이선스	- 가상자산 뱅킹서비스 (암호화폐 거래, 스테이킹, 보관, 대출 등) - Sygnum connect: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24/7 즉시 결제 네트워크 - Sygnum protect: 가상자산 커스터디 보관 - 자산에 대한 토큰화 서비스 제공
아니마 뱅크 (ANIMA Bank)		-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핫월렛, 콜드월렛) -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상품 등

- 스위스는 유니버설 은행 원칙 하에 은행의 증권 거래, 인수 및 발행이 허용

* 한국은 은행은 특정 한도 내에서 증권 투자 및 대차 업무 허용

- SIX 디지털자산 거래소(SDX)
 - SIX 금융 그룹의 스위스 증권거래소(SIX Swiss Exchange)는 2021년 9월 FINMA의 승인을 통해 증권거래소이자 중앙예탁기관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
 - 금융시장인프라법(2024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중앙증권예탁기관, DLT 거래시설은 금융시장인프라로 정의되어 금융시장인프라법의 인가요건을 따름

* 참고2 금융시장인프라법 인가요건

8) 출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위스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징은?, 2023.11

- 금융시장인프라법(FMIA)에 따라 ① 증권거래소, ② 중앙증권예탁기관 혹은 ③ DLT 거래 시설 인가를 통해 DLT 증권 거래 서비스 제공 가능
- 2024년 5월 기준 SDX 자사 플랫폼에서 발행한 디지털 자산 10억 CHF(약 11억 달러) 돌파
- * 토큰 발행은 대부분 스위스 프랑(CHF)을 CBDC로 발행하는 스위스 국립은행의 헬베티아 프로젝트(Helvetia phase III)에 의한 것

- FINMA ICO 가이드라인 중 STO는 자산형 토큰에 해당할 수 있음
 - 자산형 토큰(Asset token)은 토큰 발행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 등 일정한 자산(asset)을 표창하는 토큰, 금융시장법(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 FMIA)상의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거래법(Stock Exchange Act, SESTA)을 따름
 - 물리적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토큰도 포함
 - 자체발행된 무권화 증권(self issued uncertificated securities)이 FMIA에 정의된 증권으로 인정되더라도 공적 장부 등록은(book-entry) 규제 대상이 아님, 이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의 공모발행(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to third parties) 시에도 적용
 - 단, 증권거래소 규제(Stock Exchange Ordinance, SESTO)에 따르면 금융시장법(FMIA)에 정의된 파생상품의 생성 및 발행 시장이 공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증권 규제의 대상(Art. 3 para. 3 SESTO)
 - 1차(발행)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제3자의 증권토큰을 인수(underwriting)하거나 공개적으로 판매(offering)하는 행위는 전문적으로 수행될 경우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으로 간주됨(Art. 3 para. 2 SESTO)
 - 발행된 토큰이 주식이나 채권과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될 경우, 스위스 채권법(Swiss Code of Obligations)에 따라 투자설명서(prospectus)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FinSA) 제36조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어도 투자설명서 제출이 면제 가능한 경우
 - ① 전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 ② 500명 미만 투자자 대상일 경우
 - ③ 최소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 투자하는 경우
 - ④ 단위당 액면가(face value per unit)가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인 경우
 - ⑤ 12개월간 총 공모금액이 800만 스위스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요약 및 시사점

가 추크의 성공요인 요약

- 취리히 인근,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영어 사용이 자유로움
- 분산원장기술 및 토큰에 대한 선제적인 법령 정비
 - 분산원장기술법(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ct), ICO 가이드라인,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등
- 주의 지방자치권을 활용한 기업 친화적 정책
 - 낮은 법인세율,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정책 등
- 인근 공과대학을 통해 공급되는 고급 기술 인력
 -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 로잔 연방 공과대학, 루체른 대학교 등
-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 이더리움의 설립
 - 2014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이더리움 재단을 추크에 설립
 - 이더리움의 성공으로 관련 블록체인 기업이 주변 지역에 설립되기 시작
 -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총 8명) 중 비탈릭 부테린을 제외한 나머지 창립자가 흩어지는 과정에서 스위스에 블록체인 기업을 창업
 - *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 카르다노 재단(Cardano) 설립
 - 개빈 우드(Gavin Wood): 폴카닷(Polkadot) 설립
 - 조셉 루빈(Josep Lubin): 컨센시스(ConsenSys) 설립
- 관련 기관, 자율 협회 등의 활발한 포럼 개최 및 연구 활동
 - 크립토밸리 협회, 스위스 블록체인 협회, 홈오브블록체인 이니셔티브 등

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시사점

- 부산 지역 IT 분야의 인력 육성을 통한 디지털금융 개발자 확충 필요
 - ① 부산 지역 공과대학의 금융 융합 교육 제공 필요
 - 블록체인 및 AI 개발 분야의 금융 분야 융합 공모전, 실무 교육 프로그램 특강 등
 - ② 해외 IT 인재의 부산 유입을 위한 비자 지원 및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
 - IT 및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고도의 능력이나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부산 체류 및 구직활동 허용, 고용 시 고용비자 발급
- 디지털금융 관련 기관 간의 협회 신설 혹은 협약을 통한 디지털금융 기술 연구 촉진 필요
 - 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 조사 및 정기 레터 작성·배포
 - 부산 지역 특화(블록체인 등) 기술, 자금세탁방지, 디지털금융 보안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
- 부산시 지방 조례(혹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를 통한 디지털금융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혜택 제공 필요
 - (국세·지방소득세) R&D 투자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
 - (국세·지방소득세)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 참고4의 마. 현행 국내 R&D 및 특허재산권 관련 세액 공제 관련 법률
- 부산 지역 블록체인 및 디지털금융 기술 투자 벤처캐피탈 필요
 - 스위스 CV VC는 기업 유치, 투자 및 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CV Labs를 운영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유료 공간 및 컨설팅 지원 등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수행, CV VC 단일 법인에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시너지 효과 발생

CV VC	스위스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 회사로, 전 세계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블록체인 산업 연구 보고서를 발행
CV Labs	CV VC 법인 회사의 생태계 구축 역할을 담당, 스타트업 유료 입주 공간, 법률 및 세무 컨설팅 지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부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역할과 투자 역할(벤처캐피탈)의 협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 확대 필요

참고1 스위스 법인세 체계

○ 스위스 조세 체계

- 연방세, 주(칸톤)세, 지방세가 부과
- 개별 주(칸톤)의 세법이 상이하며 세율 결정 권한은 주(칸톤)에서 행사

○ 주(칸톤)세

- 개인 및 법인은 추크 주에 거주지나 본사 혹은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
- 특정 조건 하에서는 스위스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도 추크 주의 자산 및 소득에 대한 과세 발생 가능
 -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전문적인 일을 통한 소득(경영 보너스, 회의 참석 수당 등)에 대해 원천징수 과세가능(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 방지 협약(DTT) 확인)

○ 소득세 및 자본세(Capital tax)

-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세, 주세, 지방세가 부과되며 자본에 대해서는 주세, 지방세만 부과
- 법인의 활동 유형(주식회사(AG), 유한책임회사(GmbH))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일반 사업 회사(Operating company)

- 상업, 제조, 서비스 부문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
- 일반 세율(약 12%) 적용
- (과세 대상) 과세가능 순이익(Taxable net earning), 납입 자본(액면가 또는 지분 자본), 공개 및 비공개 적립금

○ 과세 혜택

- (본사 회사 지주회사) 연방 차원의 세제 혜택 제공

회사 유형	설명 및 요건	혜택
본사회사 (Principal company)	- 해외 자회사 및 자매회사와의 위탁거래를 수행하거나 해외 제조 주문거래를 할당하는 법인	- 연방세: 해외 사업 관련 공제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 주된 목적이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holding investments)이며, 스위스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 - 총 자산(총 수익)의 2/3 이상이 투자 또는 투자 수익에서 발생해야 함	- 주(칸톤) 소득세: 면제 자본세(Capital Tax): 낮은 세율로 부과 - 연방세: 타 회사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감면 가능 (participation deduction)

- (투자 회사) 연방세에 대한 참여 공제(participation deduction)와 유사하게 주(칸톤)세에 대해 주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가능

- (관리 회사) 스위스 내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 과세, 해외 발생 소득은 비례적으로 과세, 투자 수익 비과세

* 주소 등록 사무소(Domicile company)와 혼합회사(Mixed company)는 관리회사에 포함

회사 유형	요건
주소 등록 사무소 (Domicile company)	- 추크 주에 등록된 주소만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 - 직원 및 사무실이 없어야 함
혼합 회사 (Mixed company)	- 외국 기업의 지점 또는 법인, 주요사업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스위스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보조적인 수준에서 그쳐야 함 - 총 매출 및 총 구매의 최소 80%가 해외에서 발생해야 함 - 스위스 내의 자체 생산 및 유통 불가

<혼합회사에 대한 세금>

1. 소득세 세율 5.75% (단순세율은 세율 승수에 곱해져 적용)

$$\text{Total Tax} = (\text{Taxable Profit} \times \text{Simple Tax Rate}) \times \text{Tax Multiplier}$$

과세 순이익은 부문별 회계(Segment Accounting)을 통해 평가

- 일반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 유형

- ① 스위스 내 투자 수익(이자, 배당금, 자본소득)
- ② 스위스 내 무형자산 소득(특허 및 상표 라이선스): 최대 20%
- ③ 스위스 내 무역 소득: 최대 20%
- ④ 이중과세 방지 조약 적용 대상 소득(이자 및 로열티) *과세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질 경우
- ⑤ 스위스 내 부동산 소득(시장가치 기준의 귀속 임대료 포함)

* 스위스 외부에서 발생한 소득은 스위스 내 법인의 정규직 직원 수에 따라 계산

5명 이하: 5%

6명 이상 10명 이하: 10%

11명 이상 30명 이하: 15%

30명 초과: 25%

(회사가 스위스에서 운영되는 경우 과세 비율이 10% 증가하나, 최대 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 총이익을 참고하여 적용비율 결정

해외 영업이익이 2억 스위스 프랑을 초과(12개월)하고 부문별 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직원 수나 스위스인의 지분과 관계없이 과세할당량은 10%

2. 자본세 세율 (과세 자본의 0.01%, 최소 CHF 250)

회사의 자본(equity)에 부과

자본은 유상증자, 납입 자본, 이익잉여금, 공개 및 비공개 적립금으로 구성

○ 원천징수세

-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 기업의 이익배당(배당금 또는 기타 형태의 이익 분배)는 스위스 연방의 원천징수세 적용

-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며 배당세율 35% 적용

○ 부가가치세

- 스위스 내의 총매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표준 7.7% 적용

참고2 스위스 금융시장인프라 인가 요건

- 금융시장인프라법(2024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중앙증권예탁기관, DLT 거래 시설이 금융시장인프라로 정의됨

<금융시장인프라법>

제4조 (인가의무)

1. 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결제시스템의 경우, 금융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참가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FINMA의 인가가 요구됨(단, 은행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3. 스위스 중앙은행(SNB)가 직접 운영하거나 SNB를 위해 운영되는 금융시장인프라는 FINMA의 인가 및 감독대상이 아님
4. FINMA의 인가 후에만 금융시장인프라는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er)에 등재될 수 있음

제5조(인가요건) 본 절과 각 금융시장인프라 유형별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음

제6조(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진 금융시장인프라의 추가 요건)

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인프라(제22조 참조)는 제5조의 요건 외에도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7조(변경 사항 신고 의무)

1. 금융시장인프라는 인가 또는 승인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면 FINMA에 즉시 통보해야 함
2. 중요한 변경 사항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음
3. 본 조항은 FINMA가 승인한 외국 금융시장인프라에도 준용

제8조(조직 및 경영구조)

1. 금융시장인프라는 스위스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본사 및 본점이 스위스에 위치해야 함
2. 적절한 기업 지배구조를 수립해야 하며 경영진과 감독·감사 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보장해야 함
3.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ICS)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내부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운영해야 함

제9조(건전한 사업 운영 보장)

1. 금융시장인프라 및 경영진은 건전한 사업 운영을 보장해야 함
2. 경영진은 양호한 평판을 갖추고 필수적인 전문 역량을 보유해야 함
3.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 역시 양호한 평판을 유지해야 함
4. 유자격 참가자의 주식 취득 또는 처분은 FINMA에 사전 신고해야 함

제10조(부대 서비스 제공)

1. 법인은 하나의 금융시장인프라만 운영 가능함. 단, 증권거래소가 다자간 거래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

2. 금융시장 관련 법률이 정한 추가 인가 대상 서비스는 FINMA의 추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3. 금융시장인프라가 인가 대상이 아닌 부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 FINMA는 조직 개편 또는 추가 자기자본 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11조(아웃소싱) 금융시장인프라가 리스크 관리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12조(최소 자본금)
1. 금융시장인프라의 최소 자본금은 전액 납입되어야 함
 2. 연방 평의회가 자본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
- 제13조(업무 연속성 유지) 금융시장인프라는 운영 중단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운영을 유지하거나 복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제15조(금융그룹) 금융시장인프라가 금융 그룹의 일부인 경우, FINMA는 해당 인프라의 인가를 적절한 통합 감독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 등
- 제16조(혼동 및 기만 방지), 제17조(국제 업무 보고 의무), 제18조(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 보장), 제19조 문서화 및 보관 의무, 제20조(이해관계 충돌 방지), 제21조(필수 정보 공개 의무)
- 제22조(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기반시설 및 사업과정)
1. 중앙거래소, 중앙예탁기관, 결제시스템, 중앙 보관, 청산 또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DLT 기반 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
- 제23조(특별 요건)
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특별 요건은 아래 사항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반영해야 함
(계약, 결제수단, 리스트 관리, 업무연속성, IT 시스템과 관련될 수 있음)
 3.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을 제정
- 제24조(회복 및 정리 계획 수립)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인프라는 위기 발생 시에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조치를 명시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사업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함

* 스위스 법(독일어 원본)의 영어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법적 효력 없음

참고3 우리나라의 ICO, STO, 암호화폐 관련 법률 동향 등

가 국내 ICO 관련 법률 동향

- 2017년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ICO 전면금지 발표
 - (배경)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지난 2017년 9월 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
 - 그러나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 인식을 같이한다는 점 고려
 - ⇨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
- 2019년 금융위 ICO 사례 실태조사
 -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
 - * 자본금 1천만 원 미만, 임직원 수 3명 내외(국내회사 임원이 겸직)
 - 해외에서 실시한 ICO나, 한글 백서 및 국내 홍보 등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위한 자금 모집이 이루어졌음
 - ICO 관련 중요한 투자 판단 정보(회사 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음
 -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및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됨

- P2P 대출 유통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 발견

나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률 동향

○ 비증권형 가상자산

- 기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으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부터 시행
-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

-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① 매도·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③ 이전, ④ 보관·관리, ⑤ 매도, 매수 및 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 또는 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

1.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제한	-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로 제한
2. 가상자산의 범위 제한	- 특금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
3.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 마련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① 고객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③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행위 방지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절차·업무 지침을 확인해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할 것
4.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 및 기준 마련: 트래블룰(Travel Rule)	- 100 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에 적용 개인 간 거래에는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끼리 거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에만 트래블룰 적용 - 트래블룰 적용 시기: 2022. 3. 25.부터 시행
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금융정보분석원)	-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행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 의견 작성

○ 2024년 7월 가상자산법(1단계)

- 특정금융거래법에서 다루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이관하여 새롭게 정의

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 이용자의 예치금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혐의에 대한 금융 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가능
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 - 금융위원회는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가능

○ 가상자산법(2단계) 및 단계적 혁신 추진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와 유사한 통합법 체계 구축 목표
-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20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 해당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명시된 의무를 모두 수행한 이후에만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또한, 내부적으로 보유한 유보 토큰의 자산 인식을 제한하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고객 위탁 자산에 대한 통제권 판단 기준도 포함

○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보고 의무

- 가상자산에 대한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하는 기업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 거래 내역은 한국은행에 월별 보고해야 함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 2024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이 2년 유예
- 가상자산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

○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

- 현재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등 감독당국의 권고로 인하여 발급이 불가능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
-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법집행기관, 비영리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 (2단계) 투자 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전문투자자 등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중장기 검토 예정

○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
-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은 현행법상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공시·영업·시장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현행 제도 내에서는 무권화 방식*을 특정하고 있어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 불가
- *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 하도록 하여 장부상 기재를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것
-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점검해야함

[1]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하는 것’ 으로 정의(§4①)
- * §5 투자자가 원본을 초과한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으로 정의(§3①)
-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예: 실물증서 발행, 전자 등록 등), 특정 기술 채택 여부(예: 분산원장 기술 활용 등),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함
- * §4⑨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봄
- 자본시장법 적용과 관련한 증권 여부 판단과 별도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등과 관련된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자본시장법 외 여타 법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확인할 필요

-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로 구분하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기구에 대한 수익권이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은 별도로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정

[2]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판단

- 투자계약증권은 다른 5가지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됨(§46)

주요 요건	내용
① 공동사업	- 수평적 공동성 또는 수직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 - 수평적 공동성 : 2인 이상 투자자 간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수직적 공동성 : 투자자와 발행인 간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경우
② 금전 등을 투자	- 투자되는 금전 등은 반드시 법정통화(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법정통화와의 교환 가능성, 재산적 가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주로 타인이 수행	- 타인(발행인)의 노력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영상의 노력이어야 함 - 발행인이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외에 사업주체의 공동적·집단적 노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 - 발행주체와 사업주체가 형식적으로만 상이한 경우 공동 발행인으로 볼 수 있음 - 투자자가 사업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주로 타인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 귀속 권리	- 장래 일정 시점이 도래하거나 일정한 객관적 조건(예: 매출액 목표)이 달성될 경우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기로 계약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 투자자의 권리가 스마트계약을 통해 이행되나 그 스마트계약의 구현을 계약으로 약속한 발행인이 있다면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로 해석 가능 - 발행인 등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한 사업의 성과에 따른 수익을 귀속시키기로 약속한 경우 해당함. 특히 약속한 수익이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익과 비례관계에 있거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을 환산하여 분배하기로 약속한 경우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에

	해당함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직접 분배할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속하거나, 발행인이 제3자와의 계약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제3자가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등 투자자와 발행인 간 계약에 따른 수익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
㉔ 이익획득 목적	- 투자자는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투자하였어야 함

[3] 현행[23.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제도

- 디지털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토큰 증권’이라 한다), 현행 법령상 증권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여야 하며, 관련 행위의 적법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 공시, 증권업·집합투자업·거래소 등 인가·허가·등록, 불공정거래 금지 등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공시,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등)

- 토큰 증권의 발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함^{*}

* §2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

- 전자증권법 개정 등 토큰 증권 발행 제도를 정비하기 이전에는 실물증서 형태의 유가증권 또는 현행 전자증권법상 정해진 전자등록 방식에 따라 전자증권을 발행해야 함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발행이 불가능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유통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어 엄격한 매출 공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해당 증권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유통이 어려운 경우로서 증권 발행·유통을 통한 사업의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해 테스트 가능

- 단, 토큰 증권에 대해 현행 전자증권법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특례가 불가능^{*}

* 토큰과 1:1로 매칭되는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등 기존 전자증권화 필요

- 발행과 유통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발행하려는 증권의 특성상 별도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발행과 유통의 겸영을 통해서만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겸영이 허용

[4] 향후 체계 정비 방안

발행	- 향후 전자증권법 정비를 통해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규정할 계획 - 토큰 증권이 소유자에게 전자증권법상 효력(권리 추정력 및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되어 재산권이 보호되고 디지털자산 형태로도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향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자기발행 토큰 증권이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 법상 공부(公簿)를 기재·관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 자기자본과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 등이 요구될 예정 - 전문투자자 사모 도입,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30억원) 및 소액공모Ⅱ(100억원,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제도 신설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우려가 적은 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공시 부담을 완화할 계획 * 상세한 내용은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19.10월) 참조
유통	- 토큰 증권이 발행·유통 수요가 높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 이하 같음) 관련 유통제도를 정비하고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계획 -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유통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에도 향후에는 유통 관련 제도를 전면 적용해 나갈 예정 -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매출 공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둘 것임 * 수익증권에 비해 도산절연,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투자한도를 더 낮게 정하여 차등화할 예정 - 인가 요건은 현행 채권 장외거래 투자중개업 수준을 감안하여 최소 자기자본 및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 등이 요구될 예정이며, 토큰 증권이 특성을 감안하여 보안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음

○ 국내 STO 발행·유통 사례⁹⁾

- 국내 STO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일부 조각투자사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카사·비브릭·편블·소유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실물 자산을 수익증권*으로 디지털화하여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도 거래가 가능한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9)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토큰증권 발행(STO) 현황 및 시사점, 2023

*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전신탁에 한해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분산원장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동 플랫폼 서비스’가 지정됨에 따라 카사·루센트블록·편블 3개사에게는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등 특례가 적용

** 세종텔레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증특례 구역 지정에 따라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 개설 및 금융투자업 영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음

- (카사) 2018년 설립된 핀테크 기업,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DABS)을 통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카사 앱을 통해 투자자 개인도 5천 원부터 원하는 만큼 상업용 부동산에 간편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현재까지 총 7건의 건물을 상장하고 2건의 건물을 매각함



카사 서비스 흐름도

- 규제 특례 「자본시장법상 제110조 제1항, 제373조, 제 11조」

* 자본시장법상 ①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②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 및 거래소 인·허가 특례

라

국내 법인세 체계

○ 법인세 세율(2023년 이후)

법인종류 \ 소득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 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9%	-	2억 이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원			

국세청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마

국내 R&D 및 특허재산권 관련 세액 공제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상 현행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 2)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 개발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목의 비율+나목의 비율

*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연구 및 인력 개발 세액 공제 대상인 디지털금융 관련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현행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2조)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다음 각 목의 비율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함)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상 현행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제12조)

①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기존 소유자 기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② 취득*(새롭게 구입하는 매수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등

-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04조)

-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 ② 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
- ③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는 제외